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9.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77호로 2011년 9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의회 규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을 규약에 반영(안 제5조).
- 나.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2년으로 함(안제7조).
- 다.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함(안 제9조제1항).
- 라.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마.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함(안 제14조).

## 4. 검토의견

- 본 개정규약안은 안양천에 인접한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시로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에서(2011.3.28) 결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1) 안 제5조는 회장 1인에서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 2인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반영함.
  - 2) 안 제7조에서는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회장임기를 1년에서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규정함.
  - 3) 안 제9조는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정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4)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자체단체의 과장에서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규정함.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산업화로 인한 안양천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창립되어 그동안 안양천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조류·어류 및 수생식물 생태조사 및 지도제작, 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본 개정규약안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환경 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52조, 제15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현황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현황

◆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 ◆ 구성목적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구성일시 : 1999. 4. 29.

◆ 구성단체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 (이상 13개 자치단체)

◆ 조 직 : 회장 2인(서울시1인, 경기도1인, 임기 2년, 연임가능)

☞ 공동회장 : 최대호 안양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 주요기능 :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연 령

- 1997. 4. 14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 1997. 5. 8 : 안양천 유역 11개 기초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 1998. 10. 12 : 시·구별 협의 규약(안) 의회승인 완료
- 1999. 4. 29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총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 2001. 9. 11 : 목감천 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
- 2001. 10. 9 : 부천시, 시흥시 참여 동의
  - ※ 안양천 유역의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광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
- 2011. 3. 28 :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개정 결의